RFP번호	1	공모유형	품목공모형			
사업명	우주개발진흥-인공위성개발-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					
RFP명	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					
PM분야	우주기술	보안과제	여부	일반		

1. 추진배경

- o 뉴스페이스(New Space) 시대 초소형위성 시장은 '21년 기준 22.68억불이며 향후 지속 성장하여 '26년 57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(출처: Marketand Market)
 - ※ 50kg급 이하의 초소형위성의 발사 비용 부담 경감, 초소형위성 플랫폼(큐브위성) 활용, 상용부품 사용 등으로 관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기대되고 있으며, 6Unit 이상의 큐브위성을 활용한 우주 비즈니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o 국내에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, 우주 시장은 헤리티지 (Heritage, 우주 검증 이력)를 중시하여 진입 장벽이 높음
- 우주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·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실질적이고
 종합적인 초소형위성 개발 지원 확대 필요

2. 연구개발목표

- ㅇ (최종 목표) 국내 중소·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 위성(무게 50kg 이하)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, 우주 검증 및 사업화 실시
 - 기업당 초소형위성 1기 비행모델(FM) 개발을 위한 설계/제작/시험/발사/운용 및 활용, 양산 준비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 수행

○ (단계별 목표)

1단계('22)	우주 비즈니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시제위성(1기) 개발	탑재체 시험모델(EM) 제작, 시험	
2단계('23~'24)	구구 미르니프 글등을 되면 오모형 시세되었(1기) 개글	시제위성 비행모델(FM) 제작, 시험	
3단계('25~'26)	시제위성 발사, 운용 및 해외 경쟁력 있는 초소형위성 활용 우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

3. 성과목표

- (1단계) 시제위성의 탑재체 시험모델(EM) 설계 및 검증
 - 시제위성의 예비설계 및 예비설계 검토회의 수행, 탑재체 시험모델(EM) 제작 및 기능 시험 실시 등
- (2단계) 시제위성의 비행모델(FM) 개발 및 검증
 - 상세설계 수행 및 상세설계 검토회의 수행, 위성 비행모델(FM) 제작 및 기능시험, 우주환경시험 수행, 발사 전 선적 검토회의 수행 등
- o (3단계) 시제위성의 발사/운용 및 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양산, 수출 등 사업화 추진*
 - 위성의 발사 및 운용* 수행, 양산형 모델 개발, 양산시스템 구축, 데이터 처리/활용/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
 - *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발사, 양산 및 수출 등 활동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 (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 공동 계약, 양산한 다수의 위성 발사 서비스 계약 등으로 한정)
 - * 발사는 3단계 1차년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정상운용기간은 12개월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

4. 특기사항

- (지원대상) 초소형위성 시스템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중소・벤처기업 및 스타트업
 ※ 지원 신청 시점의 예비창업자도 하위 컨소시엄(산업체, 연구기관, 대학 등) 구성하여 제안 가능
 (단, 대기업/중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)
- (신청제한)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(중복 지원 불가) ※ 기존 유사기술과의 차별성,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성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
- 이 (지원규모) 1단계 최대 8개 기업 선정 및 지원, 2단계부터는 최종 4개 기업 지원
- (데이터 제공)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에 의해 시제위성의 데이터는 위성정보 활용 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사업화를 위해 공개하여야 함
- (인력활용 계획) 연구성과물의 활용(양산시스템 유지/운영 등) 등을 위하여 개발단계에 참여한 인력(대학 등)의 수급(채용 등) 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장함
- o (기술지원 수용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원 기관(항우연)의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운영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음
 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효과적인 연구수행 및 과제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함
 - 연구개발계획서내 기술자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계획을 제시

5.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

- o (선정과제) 최대 8개 과제
- **(연구기간)** '22.4 ~ '26.12(1+2+2년)
- ㅇ (연구비) 기업당 최대 42.3억원(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)

(기업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)

(단위: 백만원)

1단계	2단계		3단계		
′22년도	′23년도	′24년도	′25년도	′26년도	합계
('22.4~'23.3)	('23.4~'23.12)	('24.1~'24.12)	('25.1~'25.12)	('26.1~'26.12)	
470	940	940	940	940	4,230

- 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관련 규정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)에 따라 별도 매칭
- 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(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하는 시제위성의 규모(6U 미만 등)에 따라서 연구비는 감액될 수 있음)
- ※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해 계상하되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55조 및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최대 5%내로 제한